

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(류제동 의원 발의)

「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8일

고흥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2. 제정이유

-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에 따라,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흥군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.
- 이에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와 의료인 및 군민의 권리, 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~ 제6조)

다. 감염병 표본감시와 역학조사,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~ 제9조)

라.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

바. 감염병환자 관리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 ~ 제19조)

사.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2조 및 제23조)

4. 예고기간

○ 2020. 7. 8. ~ 7. 28. (20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. 7. 29.(수)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(의회사무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내용 :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

- 개 인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기관·단체 :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○ 제출처 :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 소 :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(59542)

- 전 화 : 061-830-6065 (FAX 061-830-5595)

○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직접방문

붙임 1.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.
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(危害)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감염병”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.
2. “감염병환자”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
2.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
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
8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
9. 그 밖에 감염병 예방·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) ①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,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.

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·관리·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·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군민의 권리와 의무) ① 군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.

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,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,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감염병 예방·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주요 감염병 예방·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
3.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
4.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
5.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(감염병 표본감시 등)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·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·단체·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역학조사 등)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역학조사에 임하는 자는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,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·누락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,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부터 제18조의4까지의 규정을 따른다.

제9조(필수예방접종)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①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.

제11조(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)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
2. 격리소·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·운영

-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 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.

⑤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.

제12조(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)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(入所)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13조(감염병환자 등의 관리)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.

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(病床)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(自家)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
2.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

제14조(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)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, 선박, 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·진찰을 거부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조사거부자”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조사·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·진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

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, 제2항에 따른 조사·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 관리 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.

⑥ 군수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5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

제15조(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)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이 제13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
제16조(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)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
2.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
3.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

제17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8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9조(소독 의무)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예방위원) ①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. 다만,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.

제21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

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

제22조(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,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를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.

제23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 등과 공유 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

제24조(표창 등)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·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고흥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.

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 :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내용 | 찬 성 여 부 | | 의 건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